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5개반 증설, 8개반 감소(안 별표 9, 별표 15, 별표 20)
 - 반 : 4,836개반 ⇒ 4,833개반(3개반 감소 - 증5반, 감8반)
 - 송정동(증2) : 미소지움 신축(22통 1~10반 → 22통 1~12반)
 - 형곡1동(증3) : 금호어울림포레2차 신축
(1통 1~2반 → 1통 1~5반)
 - 공단1동(감8) : 과소반 통합(1통 1~6반→1통 1~5반, 6통 1~13반
→ 6통 1~9반, 7통 1~9반 → 7통 1~7반, 10통
1~4반 → 10통 1~3반)
- 신축건물 지번 추가 및 오류·누락 지번 정정(안 별표 19, 별표 20)
 - 비산동 : 2통, 3통, 7통, 8통 관할 구역 지번 추가 및 이중 등재 지번 삭제
 - 공단1동 : 8통, 10통, 11통, 12통 기업체 명칭 및 학교 명칭 삭제 및 15통, 16통, 17통 지번 및 명칭 변경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

-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관내 총 4,836반에서 송정동 2반 증가, 형곡1동 3반 증가, 공단 1동 8반 감소로 총 3반이 감소한 4,833반으로 조정하고, 비산동 및 공단1동 신축건물의 지번 추가와 오류·누락 지번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읍·면·동 하부 조직인 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